

울산광역시 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1998. 7.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일반표준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작성 시달되어음에 따라 본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92('97. 12. 4)호 및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00-654('97.12.12)호의 「지방세일반조례 표준 안 시달」

3. 주요내용

- 3장 32조를 3장 52조로 확대
- 납세자 권리보호(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에 관한 사항의 신설
-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종과 대상지역 · 세율 등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98. 6. 1~6. 20(경상일보, 울산매일)
- 입법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2 절 납 세 자 권 리 보 호

제6조(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41호의3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 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 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중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 과 징 수

제9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1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

제17조(납세의무자등) 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제 1 종 : 45,000원
- 제 2 종 : 36,000원
- 제 3 종 : 27,000원
- 제 4 종 : 18,000원
- 제 5 종 : 12,000원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물건의 소재지
-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 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 2 절 재 산 세

제2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 한다.

- 제22조(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

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3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5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가.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제“가”목 내지 제“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제“가”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6월 16일부터 6월30일 까지로 한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의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의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자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 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종 합 토 지 세

제35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부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수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

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
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
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
다.

제38조(세율) ①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
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 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1,000분의 15

③ 제37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닭·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놀이터·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3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1조(부과·징수 등) ① 종합토지세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구가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구청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액조정) 구청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종종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종종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종종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사업소세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4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 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 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지 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구세조례신·구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3장32조	3장52조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제3조(세목)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규칙)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신설>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제7조(수정신고)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2절> 부과징수	<제3절> 부과징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9조(현행과 같음)
제7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10조(현행과 같음)
제8조(납기한의 연장)	제11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9조(허가등의 제한)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0조(징수유예 신청)	제1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11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제12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3조(납부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제16조(현행과 같음)
제14조(공시송달)	※ 제8조로 규정
제15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정전	개정후
제2장 보통세 <1절> 면허세 제16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7조(납기)	제2장 보통세 <1절> 면허세 제17조(납세의무자 등) 제18조(세율)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제20조(현행과 같음)
<제2절> 재산세 제18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제22조(과세표준) 제23조(중과대상지역) 제2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2절> 재산세 제21조(과세대상 등) 제22조(납세의무자) 제23조(과세표준) 제24조(중과대상지역) 제25조(세율) 제2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제2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등) 제2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30조(현행과 같음) 제31조(현행과 같음) 제32조(현행과 같음) 제33조(현행과 같음)

개정전	개정후
제27조(재산세과세대상의 등재)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 등재)
<제3절> 종합토지세	<제3절> 종합토지세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제35조(과세대상) 제36조(납세의무자) 제37조(과세표준) 제38조(세율) 제3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40조(현행과 같음) 제41조(부과·징수등) 제42조(세액조정) 제43조(신고의무) 제44조(공람 및 이의신청) 제45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6조(과세대장 비치)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3장 목적세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제1절> 사업소세
제30조(세율)	제47조(납세의무자) 제48조(과세표준) 제49조(현행과 같음) 제50조(납기) 제51조(현행과 같음)
제31조(신고의무)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의 제출)
제3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8호)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개정조례안

2. 심사정과

가. 제출일자 : '98. 7. 15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98. 7. 15

라. 위원회상정 : '98. 7. 2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 일반 표준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작성 시달되어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진상)

○ 남세자 권리보호현장을 제정하고, 세무 조사나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시 이를 교부하는 등 조례안 제6조에 권리보호 강조의 특징이 있고
○ 개정 조례안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현행조례 제12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에서는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납세자 신고의무 불이행 시에도 포탈된 징수금으로 보아, 일시에 부과 징수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 이는 납세자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잘 몰라 일시 부과 징수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며,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도 어떤 규정이 납세자 신고의무 불이행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 특히, 개정(안) 제31조부터 제33조 신고의무조항 내용 대부분이 관계공무원이 납세자 신고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의하여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 제34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치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치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정안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정에서 의무불이행 사항을 추가한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사료되며

○ 현행 제3장 32조를 3장52조로 확대하였으나, 종전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세, 종토세의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액, 중과세, 세율등을 신설하여 법령
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도 보강한데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실사결과 : 원안가결